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2153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변 론 종 결 2021. 3. 16.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전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년 9월 11.일 제175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 1) D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신용카드입회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여오던, 중 카드사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위 약정에 따른 D의 채권자 F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2020. 2. 26. 당시 27,319,675원이다.
- 2) E는 2018. 7. 5.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7. 9. 21. 사망하자 D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 4명과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5226호로 2017.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D의 법정상속지분은 2/1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및 채무자 무자력

- 1)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성립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H동주민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이미 2013년 경부터 각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 연체해 오는 등 채무를 상당기간 연체채무가 해소되지 못한 반면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 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기여분의 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연미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56.3㎡

(의 지분 중 11분의 2)

2. 위 지상

벽돌조 평층레프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3.60㎡ (2가구)

2층 93.75㎡ (2가구)

3층 89.65㎡ (1가구)

옥탑 11.70㎡ (연면적제외)

지층 82.52㎡ (2가구)

(의 지분 중 11분의 2)

- 이 상 -

